

IV-2 재류수속

1. 재입국허가 (일본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

재류기간사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날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한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허가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단 재류기간의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일회재입국허가와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또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고있는 사람은 재입국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① 재입국허가신청서 (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외국인등록증명서 (⇒부록IV-1 25 페이지)
- ③ 여권
- ④ 수입인지 3000엔 (일회허가) 6000엔 (복수허가)

재입국허가는 보통 당일내에 발행됩니다. 오사카부내에서의 수속은 오사카입국관리국에서 접수하고있습니다.

2. 재류기간의 갱신

귀하가 지금 허가를 받고있는 일본에서의 체류에는 보통 허가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경우, 갱신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허가기한이 만료하는 2달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재류기간갱신신청서 (입국관리국의 창구에 있습니다.)
- ② 여권
- ③ 외국인등록증명서
- ④ 지금까지와 이후의 재류활동을 증명하는 문서 (재류자격에 따라 각각 다르기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오사카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부록IX-2 71 페이지) 까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재류기간의 갱신을 한적이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은 문서로도 상관없습니다.)
- ⑤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 생활비 및 재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허가

서류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어 재류자격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한 당시에는 여권에 신청중임을 뜻하는 도장이 찍혀집니다. 이혼 등이 재류자격에 영향을 줄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수속은 입국관리국에서 해 주십시오.

3. 재류자격의 변경

귀하가 현재 허가받고있는 재류자격활동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재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일본을 출국하지 않고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한 시점부터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사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필요서류는 변경하려고 하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오사카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입관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HENKO/zairyu_henko10.html
(일본어로만 안내)

4. 자격외활동허가

귀하에게 주어진 재류자격외에 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로가 됩니다.
예컨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아주십시오.

필요서류

- ①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② 외국인등록증명서
- ③ 여권
- ④ 활동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